
2016년 지방재정 수시공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평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자치구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1.2	81.44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69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4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89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05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17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

© 2015년도(2014회계연도) 기금 성과 분석 보고서

'14년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립연도 : 2010년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0.12.31 조례 제1130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10.12.31 규칙 제79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677	441	2,867	△2,426	8,251	320	246	74	

II. 분석결과

1. 총 평

-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투자사업(일반회계)으로 용자('11년,100억원)를 실시해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14년 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25억원을 상환 후 잔여 보유액을 자금 운용의 안정화·최대화를 위해 이자수입과 함께 정기에금으로 관리해 꾸준한 조성액의 증가가 이루어짐
- 각 기금 예탁금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 종료 시기에 맞춰 이자 지급하고, 일반회계 용자금 이자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3년 이상의 정기에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함
- 개별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예치해두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지방재정운용현상을 지양하고, 재정용자의 형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기금운용 및 기금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96	1,003	100.7%	1,113	3,617	324.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수익 증대 및 회계간 재정운용의 탄력성 확보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수입	○ 예금 이자수입(13백만원) ○ 일반회계 용자 이자수입(420백만원) ○ 2012년 운용잔액(563백만원)	○ 예금 이자수입(20백만원) ○ 일반회계 용자 이자수입(420백만원) ○ 2012년 운용잔액(563백만원)	100.7%	
	지출	○ 예수금 이자상환 (326백만원) ○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670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326백만원) ○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677백만원)		
'14년	수입	○ 예금 이자수입(20백만원) ○ 일반회계 용자 이자수입(420백만원) ○ 2013년 운용잔액(673백만원)	○ 예금 이자수입(20백만원) ○ 일반회계 용자 이자수입(420백만원) ○ 2013년 운용잔액(677백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2,500백만원)	324.9%	
	지출	○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6백만원) ○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787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2,866백만원) ○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751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11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102억원 중 일반회계에 100억원을 용자하여 구 투자사업의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잔여 여유자금을 이자수입과 함께 관리해 꾸준한 조성액 증가가 이루어짐
- '14년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25억원을 상환하여 잔여 예수금은 77억원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 구 투자사업으로 자금 용자	○ '14년 예탁금 원리금 상환 원금 : 2,5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이자 : 366백만원 ○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 751백만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4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2,500백만원을 상환하고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 36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남은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 당 없 음	
	'13년	해 당 없 음	
	'14년	○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전용계좌가 아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영 한 것은 부적정	감사원 지적사항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금 용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11년도 일반회계로 용자한 사업비 상환기간이 '20년부터로, 용자사업 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지속적인 기금운용 필요 	상중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	-
타 기금	해당없음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통합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용자금 이자수익이 주된 조성재원이며, 개별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재원의 규모 : 8,251백만원 ('14년말 조성액기준)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889	%	1,003	%	3,61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500	69.1
	예치금회수	455	51.2	563	56.1	677	18.7
	예수금						
	이자수입	434	48.8	440	43.9	440	12.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89	%	1,003	%	3,617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3	63.3	677	67.5	751	20.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326	36.7	326	32.5	2,866	79.2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계획대비 운용실적이 높고 사업목적 달성도 또한 적정하며, 각 회계 및 기금 간 재원조성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재정융자의 형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기금운용 및 기금 존치가 필요함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설치 목적

- 재난관리(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 연도

- 재해대책기금(1995년 설치)과 재난관리기금(1998년 설치)이 재난관리기금(2005년 설치)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72	743	16	727	4,499	763	245	51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 및 재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여야 함.
- 향후 재해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난 및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사업을 역점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8	269	90	16	16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장비(자동염수장치) 구입 (140백만원, 1대) ○ 제설장비(염화칼슘살포기) 구입 (58백만원, 2대) ○ 제설자재(염화칼슘) 구입 (100백만원, 4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장비(자동염수장치) 구입 (118백만원, 1대) ○ 제설장비(염화칼슘살포기) 구입 (57백만원, 2대) ○ 제설자재(염화칼슘) 구입 (94백만원, 450톤) 	90%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 (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 (16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사전예방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예방 경고판등 안전 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상중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목표달성 지표항목	고유목적사업 실적	달성 정도
재난관리(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총당	각종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사업의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상중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 당 없 음	
	'13년	해 당 없 음	
	'14년	○응급복구 사업이 아닌 항구복구 성격의 공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적정.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전용계좌가 아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영 한 것은 부적정.	감사원 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예방활동 및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	재난관리(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상 중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해 당 없 음	
타 기금	-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 해당금액), 기금 운용 수입(발생 이자), 기타 수입금(시비 보조금) 등으로 재원구성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3,376	%	4,058	%	4,515	%
	전입금	319	9.4	450	11.1	592	13.1
	보조금	47	1.4	209	5.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500	74.1	2,500	61.5	2,500	55.4
	예치금회수	413	12.2	790	19.5	1,273	28.2
	예수금						
	이자수입	97	2.9	109	2.7	150	3.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376	%	4,058	%	4,515	%
	비용자성사업비	63	1.9	104	2.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4	0.7	175	4.3		
	예탁금	2,500	74.0	2,500	61.6	4,499	99.6
	예치금	780	23.1	1,272	31.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9	0.3	7	0.2	16	0.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공공 시설물 등의 신속한 보수·정비는 물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자체 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취지에 맞게 지속 관리·운용

'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1994)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0억원씩 출원금 적립하여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597	200	198	2	6,600	201	270	△69	

II. 분석결과

1. 총 평

-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운전자금을 협약은행사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함
- 2014년 28개 업체, 4,828백만원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금 198백만원 지원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함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인상 수상업체 등 소외 기업 및 우수기업에 우대금리를 가산하여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기금운용을 함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상환 기간은 3년이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중소기업은 언제라도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정된 재원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하여 질 높고 발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241	100	201	198	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용자규모 50억원 이내 추천 및 이차보전금 200백만원 지원	○ 19개업체, 3,157백만원 추천 ○ 이차보전금 241백만원 지원	100
'14년	○용자규모 50억원 이내 추천 및 이차보전금 201백만원 지원	○ 28개업체, 4,828백만원 추천 ○ 이차보전금 198백만원 지원	9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함
- 중소기업에 용자 및 이차보전금을 신속하게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 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	○ 관내 중소기업에 용자금 50억 중 업체당 2억원 이내를 협약은행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100% 달성	1994년 설 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98백만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용자는 상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차보전금을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적시에 신속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금 형태로 존치해야 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	-
타 기금	해당없음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이 없이 구별화되어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성격
 - 구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규모
 - 총 6,600,171천원(구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0억원씩 적립(50억원)
 -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
-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866	%	839	%	79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71	77	631	75	597	75
	예수금						
	이자수입	195	23	208	25	202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66	%	839	%	799	%
	비용자성사업비	234	27	242	29	198	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32	73	597	71	601	7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립년도 : 1991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정

<1991.12.26 조례 제248호>

-인천광역시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3. 2.25 규칙 제440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21	32	31	1	1,022	32	40	△8	

II. 분석결과

1. 총 평

- 고등학생 58명(1인당 500천원), 대학생 2명(1인당 1,000천원) 지원
-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과 액수를 정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학습 욕구 성취 및 학업정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34	85	40	31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장학금지원 사업 - 40백만원, 70명	○ 장학금지원 사업 - 34백만원, 61명	85%
'14년	○ 장학금지원 사업 - 40백만원, 70명	○ 장학금지원 사업 - 31백만원, 60명	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학금 지원내용 : 총인원 60명(고 58명, 대 2명) 31백만원 지원
-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기준(학교성적) 미달에 따라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발생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정진 및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기여	○장학금 지급(연 2회) - 지원금액 : 31백만원 - 지원대상 ·고등학생 58명(1인500천원) ·대학생 2명(1인1,000천원)	7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장학금 지원내용 : 총인원 60명(고 58명, 대 2명) 31백만원 지원
 - 목적 달성 정도 : 78%(지급기준 미달로 전반기 수혜자의 탈락)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32	저소득층 자녀의 자활자립과 학업정진 및 학습욕구 성취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지원이 필요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	-
타 기금	해당없음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성격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목적사업과 그 대상 등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구 출연금과 그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 :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022백만원으로 그 이자수익금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달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입재원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 안정된 운용성이 담보되어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성격과 재원, 그리고 안정적인 운용수익 등이 담보된 우리구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일몰제 등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함 -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년	
수 입	합 계	1,046	%	1,054	%	1,05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13	97	1,022	97	1,022	97
	예수금						
	이자수입	32	3	32	3	32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46	%	1,054	%	1,054	%
	비용자성사업비	24	2	33	3	31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1,000	96	1,000	94	1,000	95
	예치금	22	2	21	3	23	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4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령

- 설립연도 : 2001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12.6. 제정)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p279 ~ p30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05	1,123	155	968	3,573	216	460	244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도에는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으로 1개 사업단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비로 2개 자활센터에 47백만원을 지원하여,
 - 자활근로사업단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저소득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음.
- 2014년도에는 기금운용 수입이 전년대비 96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신규 사업 전세점포 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 기금을 활용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0	240	77	259	155	6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3건 270백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 2개소 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2건 200백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 2개소 40백만원 	77%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2건 200백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 2개소 5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 1건 100백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 2개소 55백만원 	6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1건 100백만원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2개소 55백만원을 기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단 지원 및 저소득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사업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참여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으로 근무환경 개선, 사기 진작 등 자활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전세점포임대사업	200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사업단의 작업장(사무실)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필요	상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비	5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계층의 욕구파악 및 적절한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을 활용한 지속적 지원 필요	상
합 계	259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재원의 성격
 - 구 출연금, 부평구 생활안정기금 전환금, 기금의 운용수익,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재원의 규모
 - 기금예치현황 : 3,573백만원(2014년말 기준)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568	%	1,045	%	1,92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4	13	85	7	173	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84	67	394	38	805	42
	예수금				5		
	이자수입	61	11	58	2	59	3
	기타수입	49	9	508	48	889	46
지 출	합 계	568	%	1,045	%	1,926	%
	비용자성사업비	17	3	40	17	53	3
	융자성사업비	200	35	200	83	100	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51	62			1,773	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14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48	42	31	11	1,359	41	31	11	

II. 분석결과

1. 총 평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 및 자립기반 조성
-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보조
-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에 기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	38	100	31	3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 실버봉사대 복장구입(1.6백만원/40명) - 실버봉사대 워크샵(1.6백만원) - 경로당회장 간담회 개최(4백만원) -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0.5백만원/10명) - 게이트볼 대회(2.2백만원) - 보상금 지급(9.7백만원/195명) ○ 신명요양원 -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협성요양원 -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협성양로원 - 양로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사미나드의 집 -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노인복지관 - 카네이션 효 축제(1.5백만원) ○ 인천부평노인참여나눔터 - 노인자차공동체활동 운영지원(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 실버봉사대 복장구입(1.6백만원/40명) - 실버봉사대 워크샵(1.6백만원) - 경로당회장 간담회 개최(4백만원) -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0.5백만원/10명) - 게이트볼 대회(2.2백만원) - 보상금 지급(9.7백만원/195명) ○ 신명요양원 -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협성요양원 -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협성양로원 - 양로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사미나드의 집 - 요양원 프로그램 지원(1.5백만원) ○ 노인복지관 - 카네이션 효 축제(1.5백만원) ○ 인천부평노인참여나눔터 - 노인자차공동체활동 운영지원(1.5백만원) 	100%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 경로당 사무장 직무교육 (9.5백만원) - 실버봉사대 복장구입(1.8백만원/40명) - 실버봉사대 워크샵(1.65백만원) - 방학교실 (0.16백만원) -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0.5백만원/10명) - 효도관광(5.28백만원) - 게이트볼 대회(2.2백만원) - 실버기수왕 선발대회 (5.14백만원) - 기능보강(2.2백만원) ○ 신명요양원 - 치매노인을 위한 원예요법 치료프로그램 (1.5백만원) ○ 노인복지관 - 카네이션 효 축제(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 경로당 사무장 직무교육 (8.85백만원) - 실버봉사대 복장구입(1.8백만원/40명) - 실버봉사대 워크샵(1.65백만원) - 방학교실 (0.16백만원) -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0.5백만원/10명) - 효도관광(5.28백만원) - 게이트볼 대회(2.2백만원) - 실버기수왕 선발대회 (5.14백만원) - 기능보강(2.2백만원) ○ 신명요양원 - 치매노인을 위한 원예요법 치료프로그램 (1.5백만원) ○ 노인복지관 - 카네이션 효 축제(0.7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 실버봉사대 운영 ○ 경로효친 합양을 위한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및 경로의 달 행사 ○ 방학교실 운영 ○ 요양원 및 양로원 프로그램 지원	상	1996년 설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목표달성지표항목	고유목적사업	달성정도
1항 :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된 운영	▷경로당사무장 직무교육	상
2항 : 각급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조직의 운영지도	▷실버봉사대 활동지원	상
3항 : 전통문화 선양	▷경로의 달 행사	상
4항 :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요양원프로그램 지원	상
5항 :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실버봉사대 활동지원	상
6항 :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부평구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실버봉사대 활동지원	3.45	- 노인들의 부진한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비적으로 보이는 재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 필요	상
경로효친 함양	5.78	-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표창하여 경로효친사상 함양	상
경로의 달 행사	7.34	- 게이트볼 대회를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동호인과의 친목 도모, 실버가수왕 선발대회를 통하여 밝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취미활동으로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상
봉사활동	0.2	- 방학교실 운영으로 모범학생 사기진작	상
카네이션 효(효)축제	0.7	- 홀몸어르신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초청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 기념식 및 위문공연 등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상
치매노인을 위한 원예요법 치료프로그램	1.5	- 각종 프로그램 지원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 및 활기찬 일상활동과 건강한 노인문화 조성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 중복성 및 유사성 없이 구별화 되어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사회복지재원

- 재원의 규모

- 1997년부터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추진 기반조성
- 2001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 조성
- 2007년 추가예산 편성 2억원 조성하여 총 12억원 조성
- 2011년 통합관리기금에 12억원 예탁
- 기금예치현황 : 원금 1,366,298천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83	%	187	%	19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0	76	144	77	148	78
	예수금						
	이자수입	42	23	42	22	41	21
	기타수입	1	1	1	1	1	1
지 출	합 계	183	%	187	%	190	%
	비용자성사업비	39	21	38	20	31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44	79	149	80	159	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14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설치연도 : 2001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80	188	72	116	1,096	175	169	6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육성사업,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도관리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생활수준 향상 및 웰빙 열풍 등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품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능동적 대처(취약분야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 등)와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고,

- 국제도시에 걸맞는 수준 높은 접객업소 육성 및 대표음식 개발 합리적이고 알뜰한 식단정착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배양과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인지습득으로 어렸을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 기금은 존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여부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및 지원·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 사업과 중복 및 유사성 없음

○ 재원조성의 적정성 여부

- 기금의 재원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부평구 전입금, 인천광역시 사업보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입으로 조성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3	119	97	99	71	71.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 지원 (11,400천원, 3,800명)	○ 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 지원 (9,189천원, 3,063명)	80.2%
	○ 품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20,000천원, 1회개최)	○ 품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19,949천원, 1회개최)	99.7%
	○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5,000천원, 8회)	○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5,000천원, 8회)	1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0,000천원, 1,516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0,000천원, 1,500일)	1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비 (2,940천원, 98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비 (2,925천원, 98명)	99.5%
	○ 주방 내부 개방 cctv 설치 (3,000천원, 3개소)	○ 주방 내부 개방 cctv 설치 (2,400천원, 3개소)	80%
	○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 (2,000천원, 2,000개)	○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 (1,947천원, 3,670개)	97.4%
	○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3,000천원, 2,500개)	○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2,930천원, 10,000개)	97.7%
	○ 어린이식품안전표지판 유지비 (1,000천원, 4개)	○ 어린이식품안전표지판 유지비 (1,000천원, 7개)	100%
	○ 전통시장 식품취급우수업소 지원 (2,000천원, 20개소)	○ 전통시장 식품취급우수업소 지원 (2,000천원, 20개소)	100%
	○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9,620천원, 1회, 6,000개)	○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 (9,174천원, 1회, 6,720개)	95.4%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500천원, 2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500천원, 25개소)	10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천원, 5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천원, 5명)	100%
	○ 식중독 예방 강사수당 (300천원, 1회)	○ 식중독 예방 강사수당 (200천원, 1회)	66.7%
	○ 우수지정업소 특별위생교육 강사수당 (300천원, 1회)	○ 우수지정업소 특별위생교육 강사수당 (300천원, 1회)	66.7%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 지원 (14,400천원, 3,600명)	○ 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 지원 (12,344천원, 3,086명)	85.7%
	○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20,000천원, 1회개최)	○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3,296천원, 현지 방문 평가실시)	16.5%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0,000천원, 연인원 1,500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0,880천원, 연인원 1,272명)	84.8%
	○ 식중독 홍보물 제작 (5,000천원, 1회, 10,000개)	○ 식중독 홍보물 제작 (4,877천원, 1회, 10,500개)	97.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지역의 특색 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 개최를 현지방문 평가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지역주민 및 영업자 의식개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식중독 예방관리를 통해 위생행정 수준향상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확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감시체계 확립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 사업내용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식중독예방과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 어린이보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을 통하여 음식점소 영업자와 지역주민의 음식 문화 의식개선 및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 및 특색음식 발굴·육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통해 식품발전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2014 지원계획	2014 지원실적	달성정도 (%)
합 계		99,400	71,397	71.12%
식품위생 홍보 및 지도관리 사업	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 지원	14,400	12,344	85.7%
	식중독 홍보물 제작	5,000	4,877	97.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0,000	50,880	84.8%
음식문화 개선사업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	20,000	3,296	16.5%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의견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단위 : 천원)

사업명	'14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합계	99,400		
① 식품위생 홍보 및 지도·관리사업	79,400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시 매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보가 필수적임.	상
② 음식문화개선사업	20,000	음식관련 행사 및 우수실천업소 지원·육성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건강생활욕구 증가에 따른 수준 높은 음식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기금의 확보가 필수적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 과징금 징수 교부금 :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납입액(2000. 7.13 이후)의 60%를 시에서 교부
 - 예금 이자수입 및 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 재원규모 : 1,096백만원(2014년말 기준)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에 관한 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외

(단위: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363	%	402	%	469	%
	전입금						
	보조금	47	13	46	11	47	1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1	50	245	61	281	59.9
	예수금						
	이자수입	28	8	30	8	31	6.5
	기타수입	107	29	81	20	110	23.6
지 출	합 계	363	%	402	%	469	%
	비용자성사업비	85	24	75	19	63	1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2	9	44	11	8	1.7
	예탁금						
	예치금	245	67	280	69	397	84.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	0	3	1	1	0.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검토

- 당초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이라는 과제는 갈수록 증대되는 국민의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목적이 여전히 명확하고 유효하며,
-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 기금을 통한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외식문화 증가 및 국제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발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시설 및 서비스 향상,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정된 기금을 활용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므로 식품진흥기금은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정부차원의 기금 운영체제인 식품안전기금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초 '86년 중앙기금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에 위한 사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94년 지방기금으로 권한 위임되었음
- 우리구에서도 2001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동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중앙관리체제로 바꾸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고유목적 달성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수입에 따른 재분배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므로 식품안전기금이 아닌 식품진흥기금으로 존속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 조성 금액의 대부분 80%이상 전년도 이월금에 의존하고 보조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에 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타수입금은 최근 5년 이내 조성액이 없음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비현실적인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하여 지방으로 교부
- 타 기금과의 규모를 비교할 때 수입구조가 작고, 식품진흥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40%는 시에 귀속되고 60%만 교부받고 있어, 실질사업은 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구 귀속 비율이 적음에 따라 구 귀속 징수교부금을 60%에서 80%까지 늘려 조성규모 확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사용 용도의 제약으로 필요사업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과 원인조사를 위한 전용차량과 차량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업무 추진

2. 재정분석 결과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자치구평균
I.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04%	3.88%	3.39%
	2. 실질수지비율	14.07%	13.22%	18.40%
	3. 경상수지비율	88.31%	69.76%	97.62%
	4. 관리채무비율	9.00%	12.59%	1.06%
	5. 현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4.43%	66.75%	25.65%
	6. 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0.00%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82%	0.00%
II. 재정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18.07%	27.96%	22.09%
	8-1. 자체세입증감률	-4.12%	6.09%	-3.18%
	9. 지방세징수율	97.25%	97.16%	97.95%
	9-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48	1.0037	1.0034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2.11%	0.92%
	10-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44%	2.94%	21.89%
	11. 경상세외수입비율	3.83%	1.92%	4.61%
	11-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67%	4.70%	2.61%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6.17%	1.51%	5.29%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77%	-1.96%	7.98%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58	0.9983	0.9873
	14. 민간이전경비비율	23.07%	8.54%	18.99%
	14-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3.46%	6.09%	15.19%
	15. 출연출자금비율	0.00%	2.41%	1.17%
	15-1. 출연출자금증감률	95.22%	-7.46%	1371.49%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23%	5.20%	6.03%
	16-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37.47%	6.77%	4.10%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0.0122	-0.0091	0.0489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627	0.1313	0.1435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2238	0.2105	0.2771
20. 행사축제경비비율	0.27%	0.43%	0.34%	
20-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6.40%	-7.59%	-16.37%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출연·출자금비율 및 증감률, 행사축제경비 비율 및 증감률이 자치구평균 대비 우수하고,

관리채무비율, 자체세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행정수요(사회복지비 등) 및 고정비용(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은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방채 신규차입 제한 및 조기상환을 꾸준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 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text{세입}-\text{지출 및 순융자})/\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text{경상비용}/\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	$(\text{관리채무}-\text{기초자치단체융자금})/\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text{부채총계}/\text{환금자산}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7. 공기업부채비율	$\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 안정성이 높음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text{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text{지방세 실제수납액}/\text{지방세 징수결정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text{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text{년도기준 } 3\text{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text{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text{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text{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text{민간이전경비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6.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text{출연·출자금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text{자본시설유지비용}/\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1-(\text{인건비 결산액}/\text{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text{업무추진비 결산액}/\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text{행사축제경비}/\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3.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시범)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19)

I. 기관현황

1]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기준 : '14년말, 단위: 개소, 명)

국	단	실	관	과	의회	직속기관	동	공무원수
4	3	1	3	25	1	1(3과1지소)	22	1,030

- 예산 : 5,640억원 ('15년도 최종예산)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22.54%, 재정자주도 40.04% ('15년도 최종예산)

2]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000.01.01	100%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감사파트, 본부장, 6팀	196	92	공영주차장, 공원·녹지 관리, 체육센터 운영

③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2007	100%	-재단본부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104	92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10	0	0	92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①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3,225	13,200
통합부채	971	869
1. 유동부채	139	152
· 이자부금융부채	36	55
· 기타금융부채	68	63
· 비금융부채	35	33
2. 장기차입부채(금융)	348	246
3. 기타비유동부채	484	471
· 기타금융부채	365	350
· 비금융부채	119	121
통합자본	12,254	12,331

- 금융채 조기상환을 통해 2014년 82억의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이자부금융부채 및 장기차입부채의 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

②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대표 계정과목(COA)	재무상대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출자금	400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	-	-	-
재단법인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	-	-	-

○ 내부거래 내용 : 부평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출자한 출자금

③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3,221	13,196
통합부채	971	869
1. 유동부채	139	152
· 이자부금융부채	36	55
· 기타금융부채	68	63
· 비금융부채	35	33
2. 장기차입부채(금융)	348	246
3. 기타비유동부채	484	471
· 기타금융부채	365	350
· 비금융부채	119	121
통합자본	12,250	12,327

④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사 ·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53	53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계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계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소송관련	53	53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1~2014	53	국공유지 동의요청 반려처분 외 27건	1	변상금 부과처 분취소 외 3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	-	-	-	-	-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	-	-	-	-	-

5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400	136	36	36	36	156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302 98	123 13	23 13	23 13	23 13	110 46
비율	100%	18%	12%	12%	12%	45%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기관	발행일자	'14년 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02						
부평구	NH 농협	'13.10.11 차환	170	금융기관 차입금	2.72%	2023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	인천 광역시	'04~'08	99	지역개발 기금	2.5%	2023	십정녹지 조성사업 등	V	인천 광역시
"	지방재정 공제회	'06~'10	33	청사정비 기금	3%	2015	삼산2 동 청사 건립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평구	302	3%~3.79%	13	NH농협 등	V	인천광역시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계					302		
부평구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001 ~2020	-	-	63	-	①
"	십정녹지 조성사업	1996 ~2020	-	-	72	-	①
"	공주차영 장	2008 ~2010	2010	O	-	-	①
"	동수녹지	2001 ~2020	-	-	20	-	①
"	부평부평 역	2007 ~2011	2011	O	-	-	①
"	십정녹지조성 (2009)	1996 ~2020	-	-	15	-	①
"	부개동 120 도로개설	2007 ~2010	2010	O	-	-	①
"	노인복지관 신축	2005 ~2012	2012	X	-	-	②
"	희망근로 프로젝트	2009	2009	O	-	-	③
"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001 ~2020	-	-	5	-	①
"	부평동남부 고가교공사	2002 ~2005	2005	O	11	-	①
"	청년수련관 건립	2005 ~2009	2009	O	16	-	②
"	십정녹지 조성사업	1996 ~2020	-	-	34	-	①
"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001 ~2020	-	-	33	-	①
"	삼산2동사 청	2005 ~2006	2006	O	3	-	②
"	부개2동사 청	2006	2006	O	2	-	②
"	부아트센터 평터	2003 ~2008	2008	O	16	-	②
"	부개1동사 청	2004 ~2007	2007	O	4	-	②
"	청천2동 복합시설	2008 ~2011	2011	O	8	-	②

*분류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6,053	5,879	85	88	
①경상수입	1,200	1,192	-	8	
· 지방세	767	767	-	-	·자치단체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425	425	-	-	·자치단체세외수입
· 매출액 등	8	-	-	8	·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사업 관련매출액,대행사업비등
②이전수입	4,151	3,985	85	80	·국고보조금,교부세,운영비보전금등
③자본수입	-	-	-	-	·자금차입,보유자산매각수입,추가 출자금등
④기타	702	702	-	-	·위에해당되지않는수입

※ 용어정의

-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 (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 활동에 의한 수입

⑥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⑦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대표 계정과목(COA)	재무상대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유동성장기차입금	13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인천시 본청의 지역개발기금 으로부터 차입
	장기차입금	85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인천시 본청의 지역개발기금 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869	866	3	-	729	726	3	-
유동	이자부금융	55	55	-	-	23	23	-	-
	기타금융	63	61	2	-	63	61	2	-
	비금융	33	32	1	-	33	32	1	-
비유동	이자부금융	247	247	-	-	156	156	-	-
	기타금융	350	350	-	-	333	333	-	-
	비금융	121	121	-	-	121	121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869	866	3	-	729	726	3	-
유동	이자부금융	55	55	-	-	23	23	-	-
	기타금융	63	61	2	-	63	61	2	-
	비금융	33	32	1	-	33	32	1	-
비유동	이자부금융	247	247	-	-	156	156	-	-
	기타금융	350	350	-	-	333	333	-	-
	비금융	121	121	-	-	121	121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53	53	-	-	-	41	41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소송관련	53	53	-	-	-	41	41	-	-	-

※ '15년도 추정 : '15년 11월 현재 소송관련 우발부채액 반영

2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869	729	689	647	605	562
① 자치단체	866	726	686	645	603	560
② 공사·공단	3	3	3	2	2	2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조기상환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지방채상환계획 및 장기미지급금(BTL) 상환계획 금액 등으로 매년 말 통합부채금액을 산정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52	-	-	-	-	-
① 자치단체	52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특정사업 : 지방채 사업 중 준공 후 3년 경과된 사업인 6개 사업(남부고가교 건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삼산2동 청사 신축, 부개1동 청사 신축, 부개2동 청사 신축, 부평아트센터 건립)

- '15년말, 준공 3년 경과 사업을 포함한 지방채 9개 사업 조기상환 (6,835백만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53	41	30	30	30	30
① 자치단체	53	41	30	30	30	3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149	-50	-40	-41	-42
① 증가 계	1	1	1	1	1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	1	1	1	1
② 감소 소계	150	51	41	42	43
이자부금융(지방채)	123	23	23	23	23
장기미지급금(BTL 등)	15	17	18	19	20
우발부채	12	11	-	-	-

- '14년말 지방채잔액은 302억원으로 '15년 당초상환계획(38억원) 및 조기상환(85억원)을 통해 123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15년말 지방채잔액은 179억원임.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당초 5.4%에서 3.2%로 감소하는 수치.
 - '16년부터는 시 매칭사업 지방채만 남아 매년 23억원씩 상환예정 ('23년 상환완료)
 - 이 외에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350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5년 333억원에서 '19년 254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출 절감 : 경상경비 절감 계속 추진, 민간 보조금 일몰제 강화 및 신규 투자사업 철저한 사전 검토
 - 신규 지방채 발행제한 : '11년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액 없음
 - 순세계잉여금 활용 : '14. 5월 지방채상환기금 조례 제정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을 지방채 조기상환하여 지속적 채무감축
 - 기존 지방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1}	3	3	2	2	2
1.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3	3	2	2	2
일반미지급금 등	3	3	2	2	2

- 우리 부평구는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공단의 부채는 사실상 없음. 다만 공기업의 결산기준이 매년 12월 31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지

급분(대행사업비 구청 정산분(반납) 등)을 다음해에 지급하는데 이것이 일반미지급금 등으로 산정되어 부채로 보이지만 실제 다음해 모두 지급되는 비용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당겨짐에 따라, 공단에서 다음해 1~2월에 반납해 오던 대행사업비 정산분을 출납폐쇄기한 내인 12월 내에 반납하여 부채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1}	-	-	-	-	-
1.부평구 문화재단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출자출연기관인 부평구 문화재단은 부채 증가 및 감소사항이 없음

③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3	41	30	30	30	3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송관련	53	41	30	30	30	30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3	41	30	30	30	3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 상 약 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53	41	30	30	30	30

- 부평구는 우발부채 중 소송관련만 '14년 말 기준 53억이 있으며 나머지 우발채무는 해당사항 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